

#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48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9. 27.

제 출 자 : 서구청장

## 1. 제정이유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, 제4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1) 고용노동부, 산업안전보건공단, 노동조합, 사업주단체,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

나.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- 1) 매년 산업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

다.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
- 1) 사업장 지도, 정책개발·연구,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,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

라. 안전보건지킴이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- 1) 대상: 산업안전보건관련 자격증 소지자, 안전보건 담당자로 3

년 이상 활동한 자,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을 안전보건지킴이  
로 위촉

2) 역할: 사업장 지도, 위반 행위의 신고,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

### 3. 조례안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 및 제4조의3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#### 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'23. 8. 21. ~ 9. 11.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

5) 비용추계서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

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의결

##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협력체계 구축 등) 대구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, 대구지방고용노동청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, 사업주단체,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4조(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)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
2.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
3.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원 사업
4.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·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)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
2.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·연구
3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
4.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
5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
6.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
7.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
8.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안전보건지킴이)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건지킴이(이하 “안전보건지킴이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.

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,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
2. 기업체,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·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

3년 이상 활동한 사람

3.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

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
2.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
3.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
4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 
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□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## **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### 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「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」안 제5조(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) 및 제6조(안전보건지킴이)에 따른 지원

### 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 중 제2호

### **3. 미첨부 사유**

- 의안의 내용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
### **4. 작성자 : 안전총괄과장 최준교**